

#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

## 1. 신청요건

- 1)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(특례) : 본 대학원 석사,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(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, 박사과정은 10년, 석·박사통합과정은 12년)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
  - 2) 재심사(6개월) :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마지막 학기에 논문이 불합격되거나, 지도교수가 수정보완을 요청할 시 6개월을 연장신청.
- ※ 위의 1, 2 번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

## 2. 제출 서류

- 1)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
  -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(붙임양식 참조)
  - 지도교수 의견서 (별도 양식 없음)
  - 증빙자료(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)
  -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
- 2) 재심사 신청 서류
  - 재심사 신청서 (붙임양식 참조)
  - 지도교수 의견서(별도 양식 없음)

## 3. 제출 기간 : 2023년 12월 1일(금) ~ 22일(금) 16:00 \*제출기한 엄수

\* 봄학기는 6월 초~중순, 가을학기는 12월 초~중순

## 4. 제출 장소 : 소속 학과행정실

## 5. 심의

학기 말(12월)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(1월 말) 심의하여 다음 학기(2024년 3월) 진입

## 6. 유의사항(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자 대상, 재심사는 해당없음)

- 1)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,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**종합시험**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
  -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
  -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함(석·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에 준함)

\*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를 응시해야하는 학과

: 법, 국어국문, 영어영문, 중일어문, 노어노문, 불어불문, 독어독문, 서어서문, 사, 사회, 언어, 철, 한국사,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, 영상문화협동과정, 문화재학협동과정, 문화유산학협동과정 (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8조 2항, 10항 5호)

- 2)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(수업료의 12%)을 **매학기** 납부하여야 함(단 **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**)
- 3)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**1회**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, **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,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**
- 4)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/학과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1월

대 학 원 행 정 팀